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방문요양】

서비스제공자와 이용 어르신(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용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이하 “등외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에 있다.
4.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 한다.

- ① 장기요양등급이용 어르신은 장기요양재가급여한도액 이내에 이용하여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급여제공 시간별 급여수가의 본인부담율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급여수가 (2023년)	본인부담율/금액			
			15%	9%	6%	0%
가-1	30분 이상	16,190	2,429	1,457	971	0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2,113	1,409	0
가-3	90분 이상	31,650	4,748	2,849	1,899	0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3,625	2,417	0
가-5	150분 이상	46,970	7,046	4,227	2,818	0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4,759	3,173	0
가-7	210분 이상	58,930	8,840	5,304	3,536	0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0

- ③ 22시이후 06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4항제②호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4항제②호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④호와 제⑤호가 중복될 때는 제⑤호에 따른다.
- ⑥ 그 밖의 비용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은 아래와 같다.
-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4항제②호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 ⑥ 제④호 및 제⑤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4항제②호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⑮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의 “행동변화영역”의 ①, ⑧, ⑩, ⑮ 항목.

- 항목1 :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항목8 :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항목10 :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 항목18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6.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안전하게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② 이용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 ④ 노인학대 및 노인 인권 보호의 의무
- ⑤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
- ②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 ③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어르신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② 어르신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
- ③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 ④ 어르신이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서비스 제공자가 급여제공시간을 이용 어르신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④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 ⑤ 어르신의 등급이 변경 된 경우,
- ⑥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⑦ 어르신이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을 경우,
- ⑧ 어르신 혹은 보호자가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⑨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